

#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과학산업단지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기획단은 충청북도 청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
1. 과학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
2. 유치기업 선정, 협약, 시설지도, 지원
3. 각종 사업추진협의기구 조직운영
4. 토지거래 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
5. 토지감정, 보상 및 주민이주 종합대책 수립집행
6. 단지조성사업 추진 및 지구내 공사설계 시공 지도감독
7.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사업시행자 지정
8. 단지분양 공급 및 용지관리 대책
9. 단지내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 시공관리
10. 도시시설의 기본협의서 작성운영
11. 각종 대형사업의 홍보 및 연구개발 성과관리
12. 기타 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(단장) ① 기획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기획단에 단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건설추진협의회) ① 충청북도내 과학산업단지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추진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부지사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단장으로 한다.
-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- 1.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
  - 2. 지역개발 및 도시건설과 과학산업단지건설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인사
  - 3. 과학산업단지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행정 공무원
  -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
-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단의 개발담당관으로 한다.
-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- ⑥ 위원중 도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조내지 제5조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- 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6년 12월31일 이를 폐지한다.